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1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문화 조성을 통해 구민의 생명존중 정신 및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실태관리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반려동물 이용 안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현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 나.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8조의2)
- 다. 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 라.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2조)
- 바.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
- 사.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 복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로, “법 제2조제3호”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를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기동물”을 “유실·유기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를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로, “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15조”로, “유기동물 보호를 할”을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사람 및 법제33조제1항”을 “사람 및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으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을 “자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동작구 구민”을 “동작구민”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동물보호법」 제7조”를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기동물”을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의 수집·분석·관리를 위해 영 제5조의 민간단체 또는 제8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 등 출입안내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 반려동물 동반수칙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장비 등의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조교수이상”을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1호”를 “별지 제1호”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9조의2로 하고,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의2(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구조·보호조치와”를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피학대동물을”을 “피학대 동물을”로, “피학대동물의”를 “피학대동물의”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1조 중 “때”를 “경우”로, “영 제7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를 “(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호 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후 이주방사 할 수 있다.

제19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8조)제3항 중 “수행하는”을 “수행할”로 한다.

제22조(중전의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주민
2.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사업주체
3. 동물보호단체
4. 구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u>”이란 「<u>동물보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u>법 제2조제3호</u>에 따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p> <p>2. “<u>등록대상동물</u>”이란 <u>법 제2조제2호</u> 및 「<u>동물보호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p> <p>3. “<u>보호조치</u>”란 <u>유기동물</u>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u>유실·유기동물</u>”이란 「<u>동물보호법</u>」 제2조제1호----- ----- ----- ----- 「<u>동물보호법</u>」 제2조제3호----- -----.</p> <p>2. ----- 「<u>동물보호법</u>」 제2조제2호 및 「<u>동물보호법 시행령</u>」 제3조----- ----- ----- -----.</p> <p>3. ----- <u>유실·유기동물</u>----- ----- ----- -----</p>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 7. (생략)

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및 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 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제7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

4. -----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15조-----
-----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할 -----
-----.

5. ~ 7. (현행과 같음)

8. -----
----- 사람 및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 자를 -----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동작구민-----
-----.

제3조의2(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 ① -----
----- 「동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 -----

-----.

제4조의2(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실태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의 수집·분석·관리를 위해 영 제5조의 민간단체 또는 제8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3(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등)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 등 출입안내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 반려동물 동반 수칙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장비 등의 지원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생략)

③ ~ ⑨ (생략)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5. -----

- 조교수 이상 -----

--

6.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호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8조(맹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 제6조의2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의2(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① (생 략)
-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삭 제
- ④ ~ ⑦ (생 략)

제9조 (생 략)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의2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 피학대 동물을 -----
----- 피학대 동물의 -----
----- 경우-----

-----.

② -----
----- 경우-----

-----.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 경우-----

-----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의 반환·기증·분양)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4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경우 -----

-----.

제13조(동물의 반환·기증·분양)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우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피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제15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 · 별표 1 ·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에 따른다.

<신 설>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18조에 따른다.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6조의2 (생 략)

제17조(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
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소유
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
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8조(명예감시원 위촉) ①·② (생
략)

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
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 (생 략)

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
우 : 50퍼센트

5.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
는 경우 : 50퍼센트

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
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
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포획하는 경
우에는 중성화 후 이주방사 할 수 있다.

제18조의2 (현행 제16조의2와 같음)

제19조(출입·검사 등) ① -----
---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명예감시원 위촉)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수행할 -

-----.

제21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②

(생략)

<신설>

<신설>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주민
2.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사업주체
3. 동물보호단체
4. 구 동물복지 담당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제2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